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9. 3. 19.>

[別紙第8号の2書式] <改正2019年3月19日>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建設機械の譲渡証明書（当事者取引用）	
<p>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p> <p>私は建設機械売買事業者を介さず、譲受人との直接取引で所有している建設機械を譲渡し、その事実を証明するために「建設機械管理法施行規則」第7条第2項に基づいてこの譲渡証明書を交付します。</p>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年 月 日 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譲渡人 (印鑑捺印又は署名) </div>	
건설기계 등록번호 建設機械登録番号	
기종 및 형식 機種及び形式	
차대번호 車台番号	
매매일자 売買日	
매매금액 売買金額	
비고 備考	
<p>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第1条 (当事者の表示) 譲渡人を「甲」、譲受人を「乙」という。</p> <p>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第2条 (同時履行等) 「甲」は残金の受領と引換えに登録事項変更申告に必要な書類と売買の目的物を「乙」に引き渡すものとする。</p>	

제3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第3条 (瑕疵担保責任) 「乙」はこの建設機械を引き受けた後、この建設機械の故障又は不良等を理由に「甲」にその責任を負わせることができない。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第4条 (事故の責任) 「乙」はこの建設機械を引き受けてから生じる全ての事故に対して自己のために運行する者としての責任を負う。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第5条 (法律上の瑕疵責任) 建設機械の引渡以前に行われた行政処分又は登録事項変更申告要件の不備等の法律上の瑕疵に対しては「甲」がその責任を負う。

제6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第6条 (登録遲滞責任) 「乙」が売買の目的物を引き受けた後、定められた期間内に登録事項変更申告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それに対する全ての責任は「乙」が負う。

제7조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소지하고 “을”은 이를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때 [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7条 (讓渡証明書) この讓渡証明書は2通を作成し、「甲」と「乙」がそれぞれ1通ずつ所持し、「乙」はそれを登録事項変更申告を行う際[売買日(残金支給日)から30日以内]に登録機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특약사항 :

特約事項 :

양도인(갑) 讓渡人(甲)	성명(명칭) 氏名(名称)	(인) (印)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住民(事業者、外国人)登録番号	
	주 소 住 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양수인(을) 讓渡人(乙)	성명(명칭) 氏名(名称)	(인) (印)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住民(事業者、外国人)登録番号	
	주 소 住 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 주의사항

※注意事項

1.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譲渡人の注意事項 : この譲渡証明書を記入する際、譲受人の基本事項を記載しないと譲受人の無断転売等で不測の損害を被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必ず譲受人の基本事項を記載してください。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근저당설정 등을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譲受人の注意事項 : この譲渡証明書を記入する際、この建設機械に対する差押・根抵当権設定等を確認し、不測の損害を被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3.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譲渡人が署名する場合は「本人署名事実確認等に関する法律」第2条第3号に基づく本人署名事実確認を、譲渡人が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を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210mm×297mm(보 존 용 지 80g/㎡)